

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2. 12. 20.>

유족대표자선정서

※ 아래쪽의 유족대표자 선정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유족 대표자	성명(한자)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:)
	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의	

본인들은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

1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2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3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4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5	성명 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
	주소	대표자와의 관계 의

첨부서류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(보상금등 신청용) 각 1부

유족대표자 선정방법

- 유족 중 보상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합니다.
- 「민법」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(「민법」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 참조).
 -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)이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)보다 선순위가 됩니다.
 -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됩니다(즉, 자녀가 손자녀보다,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).
 -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,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.
-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동순위자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,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